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0. 1. 15.(수)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0년 1월 6일
- 회부일자: 2020년 1월 7일

3. 제안이유

- 2020학년도 3월 1일자 학교(유치원) 신설·폐지 및 교명·주소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학교신설

명 칭	위 치	개교일자	설립사유
충주남한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산 98-3	2020. 3. 1.	충주호암지구 유입 학생배치
충주대소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647	2020. 3. 1.	충주첨단산업단지 유입 학생배치
충주남한강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산 98-3	2020. 3. 1.	충주호암지구 유입 학생배치
충주대소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647	2020. 3. 1.	충주첨단산업단지 유입 학생배치
충주대소원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647	2020. 3. 1.	충주첨단산업단지 유입 학생배치 및 대소원초중 통합운영

○ 학교 폐지

명 칭	위 치	폐지일자	폐지사유
대소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대소새마을길 10	2020. 3. 1.	충주대소원초병설유치원 으로 통합
야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구룡로 769	2020. 3. 1.	엄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으로 통합
남한강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산6길 20	2020. 3. 1.	충주남한강초등학교로 통합
대소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대소새마을길 10	2020. 3. 1.	충주대소원초등학교로 통합
야동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구룡로 769	2020. 3. 1.	엄정초등학교로 통합

○ 학교 주소변경

명 칭	변경전	변경후	사유
서전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대월로 95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대월로 95	2019. 7. 1.자 행정구역 변경 (덕산면 → 덕산읍 승격)
옥동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507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예지로 31	
한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초금로 687-2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초금로 687-2	
옥동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예지로 4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예지로 43	
진천상신 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대월로 107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대월로 107	
한천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초금로 687-2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초금로 687-2	
덕산중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몽촌2길 19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몽촌2길 19	
서전중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예지로 42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예지로 42	
서전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대하로 47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대하로 47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2020학년도 3월 1일자 학교(유치원) 신설·폐지와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학교의 위치를 지번 주소로 표시한 것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개정안의 지번 주소 사용 현황

학교명	개정안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자
충주남한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산 98-3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수청2로 55 (호암동)	2019. 8. 9.
충주남한강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산 98-3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수청2로 55 (호암동)	2019. 8. 9.
충주대소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647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4로 48	2019. 8. 9.
충주대소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647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4로 48	2019. 8. 9.
충주대소원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647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4로 48	2019. 8. 9.

※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4~7. 생략